

**2016학년도 제4차
<제326차 이사회 회의록>**

2016. 12. 15.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6학년도 제4차

<제326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직임원	11 인	2 인
참석임원	11 인	1 인

1. 일 시 : 2016.12.15(목) 07:30 ~ 09:30 (회의소집 통보일 : 2016년 12월 7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김동연,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홍, 김선용 (11인)
- 감사 : 문휘창 (1인)

◎ 결석임원

- 감사 : 배홍기 (1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료원장 유희석,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교무부처장 장우진 (3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담당 김창현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직이사 열한 분 전원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 -

김동연

이사

이영현

(장우진 교무부처장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26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제16-402호(2016.12.7)로 통보한 내용 중 검토가 필요한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제외한 의안 제1호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2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승인(안), 의안 제3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의결 요구 동의(안), 의안 제4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5호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6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의안 제7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안 제8호 대우학원 수익용건물 신축 변경 승인(안), 의안 제9호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등 9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은 로봇수술기 최신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노후장비를 처분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장비는 2008년에 취득한 장비로 내용연수가 경과하였으며 매각 예정금액은 약 360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의 처분(매각)자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상협 : 자산 처분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제 2 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 발의.

교무부처장 장우진 : 본교 임용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8명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부교수 1명, 조교수 3명이 임용 제청되었습니다. 재임용 대상자는 총 13명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보장 교수 1명, 정년 트랙 전임교원 10명,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2명입니다. 재임용 대상자 중 약학과 박영준 교수는 본부 재임용 기준 및 정년보장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약학대학 자체 정년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번 재임용 기간동안 정년보장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박영준 교수의 요청과 약학대학의 제청으로 1년의 임용기간으로 승인 요청 드렸습니다. 별도로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기간 연장 대상자가 있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로 해당 교원은 연평균 연구실적 150점으로 본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국제저널 SSCI 논문 1편에 대하여 연구진실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제보가 있어 현재 연구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일정이 2016년 12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교원인사위원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상자의 재임용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해당 교원에게도 심사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를 얻은 상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다음으로 의료원 전임교원 신규·재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3명으로 조교수 3명이 되겠습니다. 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는 총 6명으로 부교수 2명, 조교수 4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신희택 :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박상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 3 -

기2동연

이사 이영현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기계공학과	조병남	조교수
	전자공학과	김상완	조교수
	소프트웨어학과	한경식	조교수
	물리학과	김영국	조교수
	생명과학과	주종화	조교수
	경영학과	이승환	조교수
	경영학과	최환호	조교수
	정치외교학과	이한수	조교수
	다산학부대학	이병훈	(비정년트랙 교육중점) 부교수
	다산학부대학	김진희	(비정년트랙 교육중점) 조교수
의 료 원	교육대학원	전유영	(비정년트랙 교육중점) 조교수
	경영학과	Jinjua Cui	(비정년트랙 교육중점) 조교수
	이비인후과학교실	장전엽	조교수
	이비인후과학교실	박도양	조교수
	치과학교실	지숙	조교수

- 이상 본교 12명 / 의료원 3명 -

나. 재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정치외교학과	김홍규	교수
	환경안전공학과	최권영	조교수
	전자공학과	양회석	조교수
	물리학과	이상운	조교수
	생명과학과	송영훈	조교수
	문화콘텐츠학과	장예빛	조교수
	경제학과	김태봉	조교수
	약학과	박영준	교수
	다산학부대학	홍성연	조교수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박희준	조교수
	법학전문대학원	한지영	부교수
	경영학과	윤천석	부교수
	공공정책대학원	하경희	부교수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의 료 원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이해상	조교수	2017.3.1 ~ 2020.2.29 (3년)
	안과학교실	이기황	조교수	2017.3.1 ~ 2020.2.29 (3년)
	정형외과학교실	정남수	조교수	2017.3.1 ~ 2020.2.29 (3년)
	핵의학과학교실	이수진	조교수	2017.3.1 ~ 2020.2.29 (3년)
	이비인후과학교실	박현이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종양혈액내과학교실	강석윤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 이상 본교 13명 / 의료원 6명 -

제 3 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의결 요구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의결 요구 동의(안) 발의.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의결 요구 동의(안)은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요구 동의(안)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 5 -

김동연

이사 이영현

제 4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교무부처장 장우진 :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크리에이티브 패토리 지원사업에 본교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공고문의 참여요건에 전담조직 확보가 명시되어 있어 부총장 직속기구로 창업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창업기획팀과 창업지원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김성진 : 사업 선정과정에서 요구하는 전담기구 신설(안)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기구) ① 내지 ⑧ (생략) ⑨ 산학부총장 직속기구로 프로젝트지원팀을 둔다.	제5조(기구) ① 내지 ⑧ (현행과 같음) ⑨ 산학부총장 직속기구로 프로젝트지원팀 및 창업지원단을 둔다.
제12조의2 (부총장직속기구) ① 프로젝트지원팀은 산학부총장 직속으로 교수 연구수주 진흥을 위한 기획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u>(신설)</u> ② 프로젝트지원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	제12조의2 (부총장직속기구) ① 프로젝트지원팀은 산학부총장 직속으로 교수 연구수주 진흥을 위한 기획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② 창업지원단은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창업기획팀과 창업지원팀을 둔다. ③ 프로젝트지원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6 -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u>(신 설)</u>	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u>④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 <u>⑤ 창업지원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 <u>⑥ 창업지원단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
	<u>부 칙</u> <u>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 5 호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교무부처장 장우진 : 본교는 동계방학 중 생활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을 위해 사생실 내 집기 등의 탈거 및 반출시 파기가 불가피하여 공사 진행시 폐기 처리하고자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불용처분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기동연
-7-

이사 이영현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6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정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이사회에서 주인우 이사님의 후임을 선임하지 못한 관계로 이사 정수를 11인으로 변경하였었는데 이번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를 12인으로 변경하고 후임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회 동의를 구하여 임면하는 보직에 대하여 법률로 정한 당연면직 또는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별도 이사회의 의결없이 이사장이 면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의 외부위원 선임을 의무화하여 이를 정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기존과 같이 7인으로 하되, 학교법인 이사 및 교원의 정수를 6인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1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진 : 개정(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 8 -

김동연

이사 이영현

■ 대우학원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1. 이사 <u>11인</u></p> <p>2. 감사 2인</p> <p>② 제1항 제1호의 이사 중 이사장을 포함한 2인을 상근으로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p> <p>③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p>	<p>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1. 이사 <u>12인</u></p> <p>2. 감사 2인</p> <p>② 제1항 제1호의 이사 중 이사장을 포함한 2인을 상근으로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p> <p>③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p>
<p>제46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 이외의 전임교원과 석좌교수 및 대우부교수 이상의 특임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다만,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학교의 장이 면직한다.</p> <p>③ 대학교의 교무(校務)부총장, 의무(醫務)부총장, 산학부총장, 의료원장, 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포함), 학장, 처장, 부속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병원 부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서 신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6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 이외의 전임교원과 석좌교수 및 대우부교수 이상의 특임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다만,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학교의 장이 면직한다.</p> <p>③ 대학교의 교무(校務)부총장, 의무(醫務)부총장, 산학부총장, 의료원장, 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포함), 학장, 처장, 부속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병원 부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이사장이 면직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9 -

간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⑤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각 학교에 두며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교원인 경우는 학교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각 학교에 두며 7인의 위원으로 <u>조직한다</u>.</p> <p>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6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p>③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중 교원인 경우는 학교의 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p><간서명란></p> <p>이사장</p> <p>추호석</p>	<p>개정</p> <p>이사</p> <p>김동연</p> <p>이사 이영현</p>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u>우</u></p> <p>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5. 제78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p>
〈신 설〉	<p>제78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7조에 따라 임명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p>

제 7 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발의.

앞서 의결해 주신 정관 개정 내용에 따라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종전 위원이었던 주인욱 이사님의 사임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 2인과 총장께서 추천해 주신 교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의 신경식 변호사로 자세한 이력이 회의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시고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윤 성 복 : 법률 전문가로서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선임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추천(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상연

이 사 김동연

이 사 이영현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심의하여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법무법인 화현의 신경식 변호사를 2016.12.15부터 임기 3년의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8 호 대우학원 수익용건물 신축 변경 승인(안)

이사장 : 대우학원 수익용건물 신축 변경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지난 제321차 이사회에서 승인해 주신 법인 수익용건물 중증재활요양병원의 건축 면적은 증가하여 약 13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변경 승인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건축규모의 변경은 메르스 발생 이후 병상간격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재활치료 공간의 2개층 확장 및 혈액투석실 병상증설 등 수익증대 차원에서의 건축비 증액 부분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증액된 비용 134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증액된 비용을 반영해도 운영기간 30년 기준 연 평균 수익률은 3.5%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수익용건물 신축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문길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대우학원 수익용건물 신축 변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수익용건물(중증재활요양병원) 신축 변경 승인 내용

구분	기존	변경	증(감)
위치	광교 도시지원시설 9-2-①,②	좌동	
병상 규모	500병상	490병상	(10병상)
건축 규모	지하 3층, 지상 8층	지하 5층, 지상 9층(옥탑포함)	지하2층, 지상1층
건축 면적	약 3,901m ² (약 1,180평)	좌동	
면적	약 30,400m ² (약 9,200평)	약 34,244m ² (약 10,359평)	약 1,159평
공사 기간	2016년 6월 ~ 2018년 1월 (20개월)	2016년 11월 ~ 2019년 5월 (31개월)	입찰, 인허가 포함

<간서명란>
이사장

추노석

이사

간동연

이사

이영현

제 9 호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발의.

주인욱 이사의 사임에 따라 신임 이사로 김성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추천 드리고자 합니다. 김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외과학 석사와 박사를 이수하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부원장, 삼성서울병원 부원장 등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 외과 전문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육경험 3년 이상의 자격도 충족하여 교육이사로 선임이 가능하며 향후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주요정책 심의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추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력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박상일 : 경륜, 학식 등에 비추어 대우학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사 문길주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김성 교수의 이사 선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김성 교수를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임기 4년의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아울러 김성 교수는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분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교육이사로 선임합니다.

■ 대우학원 임원 신·구 대비표

현 행				변 경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추호석	2015.9.18 ~ 2019.9.17		이사장	추호석	2015.9.18 ~ 2019.9.17	
이사	김성진	2015.6.4 ~ 2019.6.3	교육이사	이사	김성진	2015.6.4 ~ 2019.6.3	교육이사
이사	윤성복	2013.4.28 ~ 2017.4.27		이사	윤성복	2013.4.28 ~ 2017.4.27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변 경			
이 사	문 길 주	2016.3.31 ~ 2020.3.30		이 사	문 길 주	2016.3.31 ~ 2020.3.30	
이 사	신 희 택	2014.2.15 ~ 2018.2.14	교육이사	이 사	신 희 택	2014.2.15 ~ 2018.2.14	교육이사
이 사	주 인 육	<u>2013.4.19 ~ 2016.8.24(사임)</u>	교육이사	이 사	김 성	<u>관할청승인일로부터 4년</u>	교육이사
이 사	김 동 연	2015.6.4 ~ 2019.6.3		이 사	김 동 연	2015.6.4 ~ 2019.6.3	
이 사	박 상 일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 사	박 상 일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 사	신 상 협	2016.3.19 ~ 2020.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 사	신 상 협	2016.3.19 ~ 2020.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 사	최 홍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 사	최 홍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 사	이 영 현	2013.4.19 ~ 2017.4.18		이 사	이 영 현	2013.4.19 ~ 2017.4.18	
이 사	김 선 용	2016.2.7 ~ 2020.2.6		이 사	김 선 용	2016.2.7 ~ 2020.2.6	
감 사	문 휘 창	2014.5.14 ~ 2017.5.13		감 사	문 휘 창	2014.5.14 ~ 2017.5.13	
감 사	배 홍 기	2016.4.28 ~ 2019.4.27		감 사	배 홍 기	2016.4.28 ~ 2019.4.27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26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종전과 같아 저와 김동연 이사, 이영현 상임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김동연

이 사 이 영 현

10. 폐회선언

이사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26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09시 3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6년 12월 15일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성진

이사 윤성복

이사 문길주

이사 신희택

이사 김동연

이사 박상일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사 최홍

이사 김선용

감사 문휘창